

연구논문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가 연계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관련 경찰과 상담사를 중심으로*

이명신**·양난미***·김점희****·문유정*****

〈국문초록〉

성폭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상담사 109명과 경찰 114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연계실태, 연계관련 변인의 차이를 비교하고, 연계수준에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다전문직간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경찰과 상담사 간 연계정도는 가장 높았으나 연계수준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전문직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경찰과 상담사는 이차피해태도(의심, 편견), 공정성(정보제공), 다전문직간 관계(역량인정, 의사소통)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수준에 다전문직간 관계(역량인정과 의사소통)는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의 경우 그 이외의 변인은 연계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경찰의 연계수준에는 의심, 정보제공과 형사절차설명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경찰, 성폭력 상담사, 다전문직간 연계,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238).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신 경남·부산지방경찰청의 담당자분들과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경찰관과 상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 1저자,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연구소 소장(wellee@gnu.ac.kr)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여성연구소 부소장(behelper@gnu.ac.kr)

**** 공동저자,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jhee055@hanmail.net)

***** 공동저자,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novia88@hanmail.net)

© 2015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반면, 성폭력으로 인해 성적 자율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린당하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성폭력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당한 성폭력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Kaukinen and DeMaris, 2009: 1331; Jordan, 2008: 702-703). 성폭력 범죄의 신고 이후 겪을지도 모르는 위협과 이차적 피해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각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성폭력 피해자권리헌장’이 선포되었고¹⁾ 수차례의 법개정을 통해²⁾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이차피해 방지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류병관, 2006: 416).

최근 들어 경찰은 성폭력수사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전담조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2012년 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별수사대 설치, 2014년 전국 126개 일선 경찰서에 성폭력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는 등 구조적 변혁을 이루어왔다(경찰청, 2014).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6개 범죄피해자 지원관련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뉴시스, 2015). 한편, 성폭력 피해자

1)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권리헌장”을 선포하였다(조국, 2002: 202).

2) 2003년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2005년 이차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지원을 위해 2000년대 이후 국가주도로 한 장소에서 필요한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33개에 이르고 있다. 전국에 17개의 여성긴급전화 '1366'이 설치되었으며 345개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1990년대에 민간 주도로 시작된 성폭력상담소가 17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진 법의 제·개정, 경찰의 구조 개혁, 성폭력관련 기관의 확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이차피해를 줄이고 골든타임 내에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연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노력과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그리고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혁이 기대한 대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이차피해를 감소시키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성폭력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의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차피해(이차희생화)'는 피해자에게 부차적인 외상을 초래하는 비난적 태도와 행동,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실천으로(Campbell and Raja, 2005: 97),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직이 취하는 태도나 행동이 이차피해를 유발할 때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차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성폭력범죄가 처벌되지 않은 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성폭력피해의 고통 속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기는커녕, 피해자는 필요한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이차피해'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시된다.

더군다나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곤경에 처한 성폭력 피해자는 ‘적절한 처우’(proper treatment)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Laxminarayan, 2013: 145). 대다수가 여성인 성폭력 피해자는 성별감수성에 입각해 피해여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과 안전성 보장, 참여 및 자기결정권 존중, 사회정의 실현 및 권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여성중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McGregor, et al., 2009: 24-36).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에게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를 원한다. 또한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존중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여성이 지니는 이와 같은 공정성(justice) 추구의 권리는 대부분의 경우 존중받지 못한 채, 도리어 ‘이차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이차피해’는 성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가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부터 받는 부정적 반응과 부당한 처우 뿐 아니라, 정보 제공을 비롯한 필요한 서비스 받을 권리가 제대로 존중되지 않을 때에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나 형사사법절차 및 사건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차피해가 초래된다(이미경, 2013: 51).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비효과적, 비인도적 서비스 전달은 궁극적으로 ‘이차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차피해’를 일체의 비효과적, 비인도적 서비스로 규정할 때,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전문직 간 연계·협력은 이차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추구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참여와 의사결정권 존중, 필요한 정보 제공,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정성(justice) 실천 노

력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이차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뿐 아니라,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전문직간 연계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있어 다전문직간 연계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한 전문분야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다른 전문분야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이명신 외, 2014: 1104),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다전문직에게 연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이명신 외, 2014: 1119; 김호원 외, 2014: 241), 성폭력 상담사와 경찰 모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전문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문분야가 갖는 한계를 다른 전문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 관련 전문직 간 원활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사회 내의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때 성폭력으로 인한 ‘이차피해’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Payne, 2007: 92)에서, 피해자에게 적시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전문직간 연계는 필수적이다. 동시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비롯한 서비스 받을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지원하는 공정성(justice) 실천은 성폭력 피해자를 ‘이차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권리를 존중하는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실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관련 전문직이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이차피해태도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공정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는 다전문직간 연계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받게 되는 지원의 양과 질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직들이 지니는 이차피해태도, 피해자의 욕구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 그리고 연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과 성폭력 상담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전문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서로 가장 빈번한 접촉과 협력이 필요한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이차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직, 특히 경찰과 상담사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과 상담사의 이차피해태도와 공정성 실천, 그리고 다전문직간 관계가 다전문직간 연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수립하였다.

연구 목적

1. 성폭력관련 전문직(경찰, 상담사)의 연계 실태는 어떠한가?
2. 성폭력관련 전문직(경찰, 상담사)집단에 따라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 그리고 연계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3. 성폭력관련 전문직(경찰, 상담사)의 연계수준에 미치는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문헌연구

1) 연계

(1) 다전문직간 연계

연계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일하는 것”(이정호 외, 1995; 박미은, 2002: 66에서 재인용)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전문직간 연계는 피해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기관 내 여러 전문직이 협력하여 정보, 지원, 대응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Robinson, et al., 2008: 413). 공식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도 있는 ‘이차희생화’가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에 있어 성폭력의 효과를 완화 또는 매개시킨다는 점에서(Wasco, 2003: 316), 미국의 경우 이차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전문직팀(Multidisciplinary Team)의 구성과 다전문직의 연계강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전문직 팀의 활용을 통한 연계협력의 강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학 증거확보 및 효과적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성폭력전담간호사(SANE)프로그램은 성폭력 범죄의 법정증거수집 및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에 있어 성공적이었으며, SANE과 경찰 사이의 의사소통이 증진되었고 협력적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et al., 2005: 318-325). 또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높이면서 법의학적 증거 수집을 위해 SANE, 경찰, 피해자옹호자로 구성된 성폭력대응팀(SART)과 성폭력전담간호사(SANE)와 동시에 개입할 때 성폭력사건의 고소를 및 유죄 판결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et al., 2012: 142). 또한 형사사법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수사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가

다전문직팀(MDT)을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 공동수사를 통하여 아동의 반복진술을 줄이고, 정보공유, 기관 간 대화 증진, 수집된 증거의 피리를 줄임으로써 수사의 질과 아동의 웰빙과 안전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Cross, et al., 2005: 227-230; Jones, et al., 2005: 256-262). 호주의 경우 성폭력 전담수사팀과 경찰 내 다전문직팀을 동시에 운영한 결과, 경찰의 반응은 좀 더 피해자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피해자들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존중(가치 있는 고소인으로 대우,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서비스제공자의 최소화, 시기적절한 개입, 서비스접근성, 사건의 법적처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owell and Cauchi, 2011: 232-238).

다전문직간 연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존중을 받았고 고소율과 유죄판결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문직들은 피해자의 욕구와 권리에 대한 민감성이 증진되어 피해자 중심적 태도를 지니게 되었으며, 전문직(기관)간 정보공유, 의사소통의 증진으로 업무의 책무성 및 효과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다전문직 팀의 연계·협력을 통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이차피해'가 감소되고, 피해자의 욕구충족은 물론 정의추구에 대한 바람이 존중되는 '피해자중심' 서비스 실천이 가능해졌으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폭력관련 다전문직간 연계는 필수적이며, 다전문직간 연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다전문직간 연계의 장애요인: 철학 및 미션의 차이

다전문직간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전문직 간 철학 및 가치관, 미션과 업무수행방식, 훈련 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연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는 가족보존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에 치

중하는 반면, 경찰은 형사사법적 증거수집 및 가해자처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우선시 하는 반면, 경찰은 범죄수사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이다(Cross, et al., 2005: 225-227). 또한 경찰과 다른 전문직 간의 차이점은 다른 전문직들은 협력이라는 전략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반면, 경찰은 직면을 통해 비협조적인 사람에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Trute, et al., 1992: 367). 다전문직 팀이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할 경우 갈등이 증대되고 협력이 줄어든다(Cole and Logan, 2010: 351). 이처럼 전문직 간의 차이점(가치관, 미션, 수사방식, 훈련 등)은 갈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다전문직간 연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성폭력관련 전문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질적 연구에서 다전문직간 연계의 어려움은 전문직의 관점과 입장차이, 업무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폭력 상담사와의 연계에서 “서로의 관점과 입장의 차이, 상담사의 태도,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김호원 외, 2014: 231), 상담사는 “일의 방식, 언어, 철학 등이 달라서 경찰과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민감성부족, 이차 피해적 수사행동 때문에” 경찰과의 연계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신 외, 2014: 1114). 다전문직간 시각의 차이와 존중의 결여,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공통목표의 부족, 불명확한 역할규정 등은 다전문직간 연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Hook and Ford, 1998; 박미은, 2002: 69에서 재인용). 전문직의 고유 업무의 특성에 따른 관점과 입장의 차이 뿐 아니라, 상호존중 결여와 비효과적 의사소통역시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다전문직간 연계의 성공요인: 상호 존중과 이해, 의사소통

경찰과 사회복지사는 업무특성의 차이점으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하지

만, 1980년대 이후 공동수사를 위해 다전문직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양 전문직 간 역할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서로 상대방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Garrett, 2004: 78-81). 전문직 간 역할모호성 및 경계선 혼란은 연계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하거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개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전문직은 자신의 직무 뿐아니라 다른 전문직의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전문직의 명확한 역할규정과 업무수행 방식을 규정하는 업무지침(protocol)을 마련하고, 다전문직간 통합훈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박명숙, 2002: 43-44). 동시에 다전문직간 연계 시 전문직 간의 차이점(가치관, 미션, 수사방식, 훈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직간 차이점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각자의 책무를 다하면서도(Trute, et al., 1992: 367), 서로의 강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관간, 전문직간 의사소통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Cross, et al., 2005: 230). 개방적 의사소통 체계구축, 교차훈련, 갈등해결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함으로써 성공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할 것이다(Sudderth, 2006: 347).

펑과 동료들(Feng, et al., 2010: 1486-1489)은 다전문직간 연계는 'relay race'로 묘사될 수 있으며, 효과적 연계를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수용, 다른 전문직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존중, 역할의 명확화, 좋은 의사소통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효과적인 다전문직간 연계를 위해서는 각 전문직의 능력 및 숙달된 기술에 대한 **존중과 이해**, 적재적소에서 바톤을 교환하기 위한 역할의 명확화, 그리고 전체 팀으로서 다른 팀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차이점 극복 및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이차피해태도: 편견, 의심, 민감성부족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이차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미명하에 진술반복 및 피해상황의 회상이나 재연 요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여성이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곽대경·곽영길, 2006: 280-283; 김용근, 2008: 107; 류병관, 2006: 402-403; 조국, 2002: 195; 황현락, 2007: 388; 이명신·양난미, 2011: 163에서 재인용). 의료세팅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종종 무심한 또는 비인격적 대우를 받거나, 성폭력사실에 대해 말할 때 믿어주지 않거나 비난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Ullman and Townsend, 2007: 435-438; Campbell, et al., 2005: 315-316; Campbell and Raja, 2005: 97). 이처럼 ‘이차피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 등의 부정적 태도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들의 무심하거나 무성의한 반응에서도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나 형사사법절차 및 사건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차피해가 초래된다(이미경, 2013: 51).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전문직들로부터 이차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거나 “진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전문직이 지닌 **편견**에서 기인한다. 강간통념으로부터 성폭력의 “진짜 피해자”(real victim)는 “낮선 사람에게 의해 강압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저항하는 동안 신체적 상해를 입고, 젊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여성”(Du Mont, et al., 2003: 469-470)이라는 편견이 형성된다. 이러한 편견을 토대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여성이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거나 저항의 흔적이 없을 경우 “합의하의 성관계”로

간주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Lord and Rassel, 2002: 165; 이명신·양난미, 2011: 166에서 재인용).

이러한 “진짜 성폭력”과 “진짜 피해자”라는 렌즈(편견)를 사용하게 될 때, 이러한 전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성폭력은 당사자들만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황정익, 2007: 421), 피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도리어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범죄의 증인처럼 다루면서 공격적 질문을 하거나(Martin, 2005: 54; Maier, 2008: 789에서 재인용), 피해자 고소의 확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신뢰성을 사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행동, 평판, 과거의 성경험 등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Bove and Stermac, 2002: 206; 이명신·양난미, 2012: 163에서 재인용).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문직들이 지니는 **편견**은 성폭력 피해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편견과 의심은 전문직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의료, 사법,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직이 자신의 “정상적인” 또는 “직업적인” 일의 일부로 생각하는 전문직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서도 “이차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Campbell and Raja, 2005: 97). 경찰은 자신이 취하는 수사행동을 “정상적인” 또는 “직업적인” 일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만(Campbell and Raja, 2005: 97),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무 때문에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며 피해자를 민감하게 대하는 능력이 저하된다(Maier, 2008: 789; 이명신·양난미, 2012: 164에서 재인용).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민감성 부족**은 한편으로는 경찰이 지니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그로 인한 피

해자에 대한 견해(의심)에서 비롯된다(Maier, 2008: 793). “진짜 피해자”라는 렌즈를 적용할 때 이에 맞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비난하거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편견과 의심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무감하게 만들고 피해자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폭력 관련 전문직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민감성과 배려가 부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공정성(justice): 의사결정참여, 정보공정성, 절차공정성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곤경에 처한 성폭력 피해자는 적절한 처우(proper treatment)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대한 존중은 성폭력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피해자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Laxminarayan, 2013: 145).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공식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전문직으로 부터의 비난, 민감성이 결여된 논평 등 부정적인 인간적 처우로 인해 이차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이차피해를 락스미나라얀(Laxminarayan, 2013)은 ‘상호작용불공정성’(interactional injustice)의 한 형태로 보았다. ‘상호작용공정성’은 절차와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또는 제 3자에 의해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정중하게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받는 정도를 말하는 ‘대인관계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과, 왜 이런 식의 절차가 이용되는지,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를 말하는 ‘정보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으로 이루어져 있다(Colquitt, et al.,

2001; Laxminarayan, 2013: 146에서 재인용). 절차와 추이과정(progress)에 대한 설명, 사건과 관련된 사실, 이용가능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제공될 때 사람들은 의사결정이 공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Greenberg, 1993; Laxminarayan, 2013: 146에서 재인용).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으로(Lind and Tyler, 1988; Laxminarayan, et al., 2012: 261에서 재인용),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편견이 배제”될 때 절차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증가된다(Joy and Witt, 1992; Fields, 2002: 164에서 재인용).

성폭력 피해자가 바라는 ‘적절한 처우’ 또는 ‘공정한 대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 적절한 정보제공을 말하며(Reb, et al., 2006: 33),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처우’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공정성(justice)은 인간적 존중,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설명 제공,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와 의사결정권 존중 등을 포괄한다. 부적절한 처우는 피해자가 범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락스미나라얀(2013: 147)은 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존중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호작용공정성’과 수사과정에서 ‘절차공정성’을 통한 긍정적 경험을 한다면 성폭력 피해자가 외상적 경험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성폭력 피해자 31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에서부터 형사사법 재판을 거쳐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 75%의 피해자들은 경찰이 민감하게 대해주었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으며, 68%는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의 말과 의견이 존중되었고, 63%는 피해자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자의 참여정도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만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gehr, et al., 2008: 107-110). 또한 폭력범죄의 피해자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오프(Orth, 2002)는 형사사법절차의

결과에 대한 만족과 그 과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피해자들이 겪는 이차피해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Regehr, et al., 2008: 101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전문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적 처우와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적절한 정보 제공은 상호작용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이차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존중, 필요한 정보 제공, 의사결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존중, 공정한 절차의 제공을 위한 전문직의 공정성 실천 노력은 피해자를 ‘이차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의 욕구와 권리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피해자중심’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동시에 공정성 실천 노력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다른 전문직의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전문직간 연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전국 33개소의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경남지역의 성폭력상담소, 경남 1,366에서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있는 상담사 110명과 경남·부산 지방경찰청의 경찰관 120명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찰은 현재 성폭력특별수사대, 성폭력전담수사팀, 성폭력 피해자전담조사팀, 경찰서 성폭력 피해자전담조사관으로 근무 중인 경찰을 조사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상담사와 경찰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는 각기 109부, 114부로 높은 응답률(99.0%, 95.0%)을 보였다.

(2)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담사의 경우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 전화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였고, 경찰의 경우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원거리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경찰용과 상담사용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2) 측정도구

(1) 이차피해태도

‘이차피해’는 성폭력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전문직의 부정적 반응(편견, 의심, 민감성부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말한다. 이차피해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이 지니는 이차피해적 태도를 말한다. 이차피해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이차피해’척도를 종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의심’, ‘편견’, ‘민감성부족’의 3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의심’(7문항)은 피해자의 말이나 진술에 대해 의심을 품는 정도를 말하며, ‘편견’(6문항)은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민감성부족’(4문항)은 성폭력 신고 이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정도를 말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차피해태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의심’이 .839, ‘편견’이 .874, ‘민감성부족’은 .698이었다.

〈표 1〉 ‘이차피해태도’ 측정도구

	분항내용	출처
의심 (.839)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직장에 다닐 경우 피해자가 정말 성폭행을 당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박명진 외 (2014)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울지 않거나 무감각해 보이는 피해자를 볼 때, 정말 성폭력을 당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말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피해자의 기억력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된다	연구자 (2015)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면,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박명진 외 (2014)
	가해자가 선생님, 종교인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말에 더 비중을 두게 된다	이명신·양난미 (2012)
	가해자가 본 사건 외에 다른 형사적 위협이 없다고 보일 때 성폭력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뭔가 쟁기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박명진 외 (2014)
편견 (.874)	서로 잘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이명신·양난미 (2011)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면 이는 합의된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박명진 외 (2014)
	데이트하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명신·양난미 (2011)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	이명신·이계민 (2009)
	눈에 띄는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성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명신·양난미 (2011)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명신·양난미 (2011)
민감성 부족 (.698)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한다	박명진 외 (2014)
	경찰이 사건해결을 위해 자세히 질문할 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은 피해자가 감수할 부분이다	박명진 외 (2014)
	사건보도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대중에 알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연구자 (2015)
	성폭력 피해의 발생장소나 상황 등에 관한 언론보도가 피해자에게 상처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2) 공정성

‘공정성’은 전문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고자, 존중,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하는 실천 행동을 말한다.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울만(Ullman, 2000)의 SRQ에서 3문항, 이봉한·김윤주(2012)의 연구에서 1문항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권리헌장(2000)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1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공정성’척도 중 그 외의 문항들은 문헌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공정성’은 ‘참여결정’,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의 3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참여결정’(5문항)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정보제공’(5문항)은 피해자에게 서비스·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형사절차설명’(4문항)은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결정’,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참여결정’이 .852, ‘정보제공’이 .860, ‘형사절차설명’은 .761이었다.

〈표 2〉 ‘공정성’ 측정도구

문항내용		출처
참여 결정 (.852)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 입장에 대해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봉한·김윤주 (2012)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돕는다	연구자 (2015)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울만 (2000) ³⁾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함께 상의한다	울만 (2000)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거나 말하지 않을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2015)

문항내용		출처
정보 제공 (.860)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울만 (2000)
	피해자가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해자에게 모든 상담과정, 절차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해 준다 ⁺	연구자 (2015) ⁴⁾
	피해자지원과 관련된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알려준다*	연구자 (2015) ⁵⁾
	피해자에게 왜 이러한 수사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자 (2015)
형사 절차 설명 (.761)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인적정보를 알려준다*	연구자 (2015)
	피해자에게 가해자 체포여부 및 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준다*	
	피해자에게 재판의 일시 및 장소, 참여방법 등에 대해 알려 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나 태도 등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연구자 (2015)

(3) 연계수준

‘연계수준’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과정에서 다른 전문직과 협력하는 정도를 말한다. ‘연계수준’(8문항)은 오태현(3문항)과 김미주(5문항)가 개발하여 김미주(2003)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계수준’은 연계기관 담당자와의 업무협조, 정보공유, 의견수렴시 협의 및 조정의 정도를 말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연계수준’이 높

- 3) 울만(Ullman, 2000)의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4) +로 표시된 1문항은 최영애·이문자(2000)의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진료수사』에 수록된 ‘피해자권리현장’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 5) *로 표시된 4문항은 장규원(2010)이 제시한 피해자의 정보권 보호를 위해 고지되어야 할 사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음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연계수준'의 Cronbach's α 는 .909였다.

(4) 연계정도

'연계정도'(7문항)는 전문직이 성폭력관련 7개 기관(경찰,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전담의료기관, 성폭력상담소, 쉼터·보호시설, 1366,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는 연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749였다.

(5) 다전문직간 관계

'다전문직간 관계'는 연계를 하고 있는 다른 전문직에 대해 생각하거나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는 바를 말한다. '다전문직간 관계'는 Ducanis와 Golin(1979)이 개발하고, 김용득(1998)이 번역하여 사용한 '다른 전문직에 대한 인식' 척도 중 다른 전문직의 역량에 대한 인식에 대한 7문항, 표지현(1998)이 개발한 의사소통 척도에서 4문항, 김재엽·박수경(2001)이 개발한 상호작용형태 척도 중 1문항을 종합하여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다전문직간 관계'는 '역량인정', '의사소통'의 2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역량인정'(7문항)은 다른 전문직의 업무능력, 판단력, 전문성 등의 역량을 인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의사소통'(5문항)은 다른 전문직과의 정보 및 의사결정의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이 활발한 정도를 말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는 '역량인정'과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역량인정'의 Cronbach's α 는 .847, '의사소통'은 .883이었다.

4. 연구 결과

1) 전문직의 업무 특성

전문직 업무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별을 비교해 볼 때 경찰의 63.2%는 남성, 36.8%는 여성인데 비해, 상담사는 전원이 여성이었다. 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별로 살펴볼 때,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응답자의 3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지방경찰청의 '성폭력특별수사대'가 26.3%로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전담조사팀'과 경찰서의 '성폭력 피해자전담조사관'은 각각 8.8%, 7.9%였다. '여성청소년계'에 소속된 경찰은 13.2%였으며, '기타'는 6.1%였다. 상담사가 속해 있는 기관별로 살펴볼 때,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7.6%,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14.8%였다. 일반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상담사는 16.7%였고, 1366에 근무하는 경우는 8.3%, '기타' 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사는 4.6%였다.

성폭력 업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경찰은 20.9%였으나 상담사는 60.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폭력 업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경찰은 29.1%였고, 상담사는 13.8%에 불과했다. 성폭력관련 업무수행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5점 척도)는 경찰(3.61)이 성폭력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상담사(3.33)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경찰의 경우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68.1%로 가장 많았다. 상담사의 경우에는 '상담 시 인내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함'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담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22.9%로 많았다.

〈표 3〉 전문직의 업무 특성

	경찰		상담사	
성별	남성	72(63.2)	남성	0(0.0)
	여성	42(36.8)	여성	109(100.0)
소속	성폭력전담수사팀	43(37.7)	원스톱지원센터	41(38.0)
	성폭력특별수사대	30(26.3)	해바라기 아동센터	19(17.6)
	성폭력 피해자전담조사팀	10(8.8)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6(14.8)
	경찰서 피해자전담조사관	9(7.9)	상담소·보호시설	18(16.7)
	여성청소년계	15(13.2)	1366	9(8.3)
	기타	7(6.1)	기타	5(4.6)
	합계	114(100.0)	합계	108(100.0)
성폭력 업무기간	1년 미만	32(29.1)	1년 미만	15(13.8)
	1년~3년미만	55(50.0)	1년~3년미만	28(25.6)
	3년 이상	23(20.9)	3년 이상	66(60.6)
	합계	110(100.0)	합계	109(100.0)
어려움 ⁶⁾	평균 (5점 척도)	3.61	평균 (5점 척도)	3.33
어려운 이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	14(12.4)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	5(4.8)
	진위여부 판단의 어려움	77(68.1)	인내, 에너지 필요	42(40.0)
	수사할 사건이 너무 많음	6(5.3)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	24(22.9)
	수사에 전문성 부족	11(9.6)	전문적 지식·기술부족	12(11.4)
	수사에 대한 열의 낮음	0(0.0)	협력연계어려움	12(11.4)
	기타	5(4.4)	기타	10(9.5)
	합계	113(100)	합계	105(100)

2) 연계실태

성폭력관련 7개 기관 간 연계여부를 살펴볼 때, 경찰의 경우 ‘원스톱지원

6) 성폭력업무수행의 어려움정도를 비교했을 때, 경찰과 상담사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07).

센터'와 연계하는 비율이 90.4%로 가장 높았고, 상담사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가 95.4%, '경찰과 '쉼터 및 보호시설'이 94.5%, '1366'이 92.7%, '법률구조공단'은 91.7%로 모든 기관과 연계하는 비율이 골 고루 높았다. 연계정도(4점 척도)는 경찰의 경우 같은 경찰과 연계하는 정도는 3.5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원스톱지원센터와의 연계정도가 3.49로 높았다. 상담사의 경우 '경찰과 연계하는 정도가 3.24로 가장 높았다.

다전문직이 연계할 때 '누가 연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했을 때, 경찰의 경우 '경찰'이 연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5.7%였고, 상담사의 경우 '상담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8.6%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전문직이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경찰이 49.5%, 상담사가 47.6%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은 '모든 전문직'이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연계 실태

		경찰		상담사	
		연계여부	연계정도	연계여부	연계정도
연계 실태	경찰	95(83.3%)	3.56	103(94.5%)	3.24
	원스톱지원센터	103(90.4%)	3.49	98(89.9%)	3.12
	성폭력전담의료기관	95(83.3%)	3.09	88(80.7%)	2.91
	성폭력 상담소	98(86.0%)	2.94	104(95.4%)	3.16
	쉼터 및 보호시설	100(87.7%)	2.88	103(94.5%)	3.13
	1366	91(79.8%)	2.73	101(92.7%)	2.95
	법률구조공단	69(60.5%)	2.17	100(91.7%)	2.66
연계의 주체	경찰	28(25.7)		2(1.9)	
	상담사	22(20.2)		51(48.6)	
	의료인	2(1.8)		0	
	모든 전문직	54(49.5)		50(47.6)	
	기타	3(2.8)		2(1.9)	
	합계	109(100)		105(100)	

3) 전문직(경찰 vs 상담사) 간 차이 비교

전문직(경찰과 상담사)에 따른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다전문직간 관계, 연계수준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경찰과 상담사의 '이차피해태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의심'과 '편견'에서 경찰과 상담사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의심'(경찰, 2.49; 상담사, 1.84)과 '편견'(경찰, 1.97; 상담사, 1.35)의 정도는 경찰이 상담사보다 높았다. '민감성부족'은 두 전문직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경찰, 1.87; 상담사, 1.78). '공정성'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보제공'에 있어 두 전문직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정보제공'(경찰, 4.09; 상담사, 4.32)의 정도는 상담사가 경찰보다 높았다. '참여결정'과 '형사절차설명'에 있어 전문직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참여결정'을 돕는 정도는 경찰(4.06)이 상담사(4.02)보다 아주 조금 높았다.

'다전문직간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역량인정', '의사소통'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역량인정'(경찰, 3.17; 상담사, 3.37), '의사소통'(경찰, 3.02; 상담사, 3.38)에 있어 상담사의 '역량인정'과 '의사소통' 정도가 경찰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연계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찰과 상담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전문직(경찰 vs 상담사) 간 차이 비교

변수	평균			df	t	Prob)t	
	전체	경찰	상담사				
이차피해태도	의심	2.17	2.49	1.84	217	9.361	.000***
	편견	1.66	1.97	1.35	195.039	8.073	.000***
	민감성부족	1.82	1.87	1.78	206.358	1.024	.307
공정성	참여결정	4.04	4.06	4.02	209.528	.448	.655
	정보제공	4.20	4.09	4.32	210.231	-2.872	.005**
	형사절차설명	2.78	2.74	2.82	207.730	-.665	.507
다전문직간관계	역량인정	3.27	3.17	3.37	218	-2.719	.007**
	의사소통	3.20	3.03	3.39	218	-4.004	.000***
연계	연계수준	3.68	3.60	3.76	219	-1.973	.050

주: * $p < .05$ ** $p < .01$ *** $p < .001$

4) 전문직 집단의 '연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수준'에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다전문직간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찰의 '연계수준'은 '이차피해', '공정성', '다전문직간 관계'에 의해 약 60.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연계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의심'($\beta = -.189$), '정보제공'($\beta = .300$), '형사절차설명'($\beta = .176$), '역량인정'($\beta = .213$)과 '의사소통'($\beta = .257$)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연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보제공'($\beta = .300$)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beta = .257$), '역량인정'($\beta = .213$)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beta = -.189$)과 '형사절차설명'($\beta = .176$)가 연계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6〉 전문직의 연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경찰		상담사	
		β	t	β	t
이차피해 태도	의심	.189	2.198*	-.022	-.250
	편견	-.195	-1.938	-.019	-.212
	민감성부족	.066	.743	.001	.008
공정성	참여결정	-.002	-.022	.165	1.752
	정보제공	.300	3.428**	.125	1.194
	형사절차설명	.176	2.444*	.016	.199
다전문직간 관계	역량인정	.213	2.151*	.191	2.117*
	의사소통	.257	2.558*	.406	4.346***
F		19.506***		13.537***	
R ²		.607		.528	

주: * $p < .05$ ** $p < .01$ *** $p < .001$

상담사의 '연계수준'은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다전문직간 관계'에 의해 약 52.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의 '연계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역량인정'($\beta = .191$)과 '의사소통'($\beta = .406$)이 유의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의 연계수준에 '의사소통'($\beta = .406$)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역량인정'($\beta = .191$)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실태, 연계수준,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전문직의 연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를 증진시키고 이차피해감소 및 공정성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결론 및 함의

(1) 전문직(경찰과 상담사)의 업무 특성

전문직의 업무 특성에 앞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볼 때, 상담사는 100%가 여성인 반면, 경찰 중 여성은 36.8%, 남성은 63.2%이었다. 성폭력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성폭력전담수사팀, 성폭력특별수사대)은 64%였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경찰(피해자전담조사팀, 피해자전담조사관, 여성청소년계)은 약 30%였다. 반면 상담사는 전원(100%)이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성폭력관련 업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경찰은 20.9%였으나 상담사는 60.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성폭력 관련 업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경찰은 약 29%였고, 상담사는 14%에 불과했다. 성폭력 관련 업무 수행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경찰(3.61)이 상담사(3.33)보다 높았으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경찰은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응답(68.1%)이 가장 많았으며, 경찰 본연의 수사 업무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담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상담시 인내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함'(40.0%)과 '상담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22.9%)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상담 자체의 효과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성폭력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으로, 이는 2011년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팀, 2012년 성폭력특별수사대, 2013년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신설되는 등 최근 2~3년 간 경찰조직체계가 개편되어 경찰의 성폭력관련 업무 수행체계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이다. 경찰은 성폭력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기간이 짧을 뿐아니라, 수사라는 본연의 임무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상담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업무를 계속해 왔고 전원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다 '여성친화적, 피해자 중심적'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전문직(경찰과 상담사)의 연계실태 및 연계에 대한 인식

성폭력관련 기관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찰은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담사는 성폭력상담소, 경찰, 쉼터 및 보호시설과 연계 비율이 높았다. 한편, 연계정도를 조사한 결과, 경찰의 경우 다른 경찰,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정도가 가장 높았고, 상담사는 경찰과의 연계정도가 가장 높았다. 경찰과 상담사 간 연계비율과 연계정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두 전문직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연계수준에 있어 경찰과 상담사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관련 업무를 비교적 최근에 담당하기 시작한 경찰의 경우 연계수준에 있어 상담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경찰이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누가 연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 상담사의 경우, '상담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8.5%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한편, '모든 전문직'이 주체여야 한다는 응답이 경찰 49.5%, 상담사 47.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경찰과 상담사 모두 하나의 팀으로 보다는 각 전문직(기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필요시 협력하는 것으로 '연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전문직(경찰과 상담사)의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다전문직간 관계 비교

전문직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볼 때, '의심'과 '편견'은 경찰이 상담사보다 높았으며, '정보제공'은 상담사가 경찰보다 높았다. 경찰은 '수사'라는 업무 특성상 성폭력 사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을 품거나 성폭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의심'과 '편견'을 지니는 정도가 높을 수 있다. 반면에 상담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차피해를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상담사의 '정보제공'정도가 경찰보다 높은 것은 상담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업무를 담당해왔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차피해태도'와 '공정성'에 있어 나타나는 전문직 간 차이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두는 상담사와 달리,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 특성과 상대적으로 짧은 성폭력관련 업무 기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전문직간 관계의 하위변인 중 '역량인정', '의사소통'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찰에 비해 상담사의 '역량인정'과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두 전문직 모두 '역량인정'과 '의사소통'의 정도는 5점 척도에서 3점을 다소 웃도는 정도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경찰과 상담사 모두 다른 전문직의 역량을 인정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역량인정'과 '의사소통'은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수준에 공통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전문직의 역량에 대한 인정이 높을 수록 연계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다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협력수준이

높아진다는 김미주(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다전문직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연계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협력지지 요인이라고 밝힌 김용득(1998)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전문직의 역량을 인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다전문직 간 연계가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사의 연계수준에 ‘이차피해태도’나 ‘공정성’요인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사는 피해자 보호, 정서적 지원, 권익보호를 기본적 임무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 중심의’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의 연계수준에 ‘이차피해태도’나 ‘공정성’은 부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의 연계수준에는 ‘역량 인정’과 ‘의사소통’ 외에 ‘의심’,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연계수준에 ‘정보제공’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정보제공’과 ‘형사절차설명’을 많이 할수록 경찰의 연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형사절차설명 제공의 필요성이 경찰로 하여금 다른 전문직과의 연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줄 뿐아니라, 이러한 정보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연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 달리 경찰의 경우 ‘의심’이 높을수록 ‘연계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경찰이 ‘수사’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이라는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으나, 본연의 임무인 수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진위여부를 명백히 가려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말에 의심을 품거나 성폭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의심을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경찰 임무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당연한 일로 간주하거나, 이를 이차피해적 태도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수사 임무에 충실할수록 의심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심과

별개로 경찰이 해줄 수 없는 도움을 다른 전문직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른 전문직과의 연계를 더욱 원활히 할 가능성이 있다. '의심이 높을수록 '연계수준'이 높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는 경찰이 현재 처한 이중 임무(수사 vs. 피해자 보호지원)를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일면일 수도 있다.

2) 다전문직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1)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실천': 이차피해 방지를 넘어 공정성 실천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경찰과 상담사 모두 '이차피해태도'는 낮은 편이고, '공정성'관련 요인은 모두 높은 편이었다. 이차피해가 낮을수록 공정성이 높다는 점은 이 두 개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차피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부당한 처우뿐 아니라, 의사결정 참여 기회, 정보를 비롯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때에도 발생한다. '이차피해'를 성폭력 피해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비효과적, 비인도적 서비스 전달로 규정한다면, 성폭력피해자가 이차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공정성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이차피해태도 및 행동'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인간적인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권 존중, 필요한 정보 제공,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공정성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실천을 위한 노력은 한마디로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의미한다. 상담사와 경찰은 이차피해방지를 넘어서, 피해자의 권리와 공정성 추구를 위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다전문직간 연계의 체계화: 구심점 역할(리더)의 필요성

‘모든 전문직’을 연계의 ‘주체’로 보는 비율이 경찰과 상담사의 절반 정도라는 결과는 모든 전문직이 주체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전문직간 연계의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로빈슨 외(Robinson et al., 2008: 419)는 다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리더가 초기에 관련기관들을 참여시키고 결집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관련기관들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해부족과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전문직간, 다기관간 연계에 있어 핵심적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전문직들이 협력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다전문직간 역할과 업무를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한편, 상담사가 자신을 연계의 주체로 생각하는 비율(48.6%)이 높은 데 비해, 경찰이 상담사를 연계의 주체로 생각하는 비율(20.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은 연계의 주체에 대한 의견에 있어 전문직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전문직간 연계에 있어 누가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다전문직간 연계의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3) 다전문직간 연계 증진방안: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 프로토콜, 교차훈련의 필요성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수준에 다른 전문직에 대한 ‘역량인정’과 ‘의사소통’이 공통적인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전문직간 연계 증진을 위한 ‘역량인정’과 ‘의사소통’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 가치관, 미션, 업무수행 방식이

달라서 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과 상담사가 공동으로 정기적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전문직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 전문직의 역할과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공동 업무지침(protocol)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찰과 상담사 간 통합(교차)훈련을 통해 다른 전문직의 업무에 대한 존중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 증진 교육프로그램

수사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의심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심이 이차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차피해 민감성 증진과 피해자중심의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의심 등 이차피해태도가 근절되지 않는 한,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의 실천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 증진 훈련이 필요하다.

(5) 경찰의 이중책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지난 2~3년 간 진행된 경찰내부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찰은 본연의 책무인 수사 외에,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새로운 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의견상 상충되는 듯 보이는 이중의 책무 속에서 경찰은 상반되는 기대 속에 정체성 및 역할의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중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새로이 담당하게 되는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잘 수행해 나

갈 수 있도록 경찰을 위한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휴먼서비스 종사자들에게 필수인 의사소통을 비롯한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위기개입, 갈등 해결 훈련프로그램을 경찰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및 활용방안에 관한 교육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6) 경찰의 전문팀 양성을 위한 구조개편

최근 들어 성폭력전담수사팀,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팀을 조직하는 등 경찰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순환근무제로 인해 1~3년마다 전담팀원이 교체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실상 '전문성 없는 전담팀'만 존재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이미경, 2013: 66).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성 있는 전담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잦은 순환근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현행 순환근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경찰과 상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경찰과 상담사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전문직 간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상담사와 경찰의 표본 프레임에 차이가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상담사와 경찰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담사의 경우 전국의 원스톱지원센터, 경남지역의 성폭력상담소와 1366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한 반면, 경찰의 경우 전국의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려워 연구자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두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국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성폭력관련 전문직의 ‘이차 피해태도’, ‘공정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차피해와 공정성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척도를 많이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69~.87)이지만,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사전조사를 통해 내용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척도의 타당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경찰과 상담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다전문직간 연계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의료인, 법조인을 포함하여 다전문직간 연계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닐 수 있는 ‘이차피해태도’와 ‘공정성’ 실천 정도 등 업무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담사와 경찰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설문내용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편향을 줄일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간과 비용의 한계, 경찰청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표본의 크기가 100여명으로 한정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고급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미주(2004), “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간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용득(1998),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팀 협력과 평가 척도”, 『한국가족복지학』, 제2호, 9-30쪽.
- 김재엽·박수경(2001),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의 서비스 연계실태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47권, 107-147쪽.
- 김호원·권다운·양난미·이명신 외(2014), “성폭력 수사경찰관의 인식과 연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3권 1호, 215-256쪽.
- 류병관(2006),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법과 정책연구』, 제6권 1호, 395-421쪽.
- 박명숙(2002), “아동학대서비스에서 관련기관들 간의 연계성에 관한 논의”, 『한국아동복지학』, 제13권, 27-52쪽.
- 박명진·양난미·이명신(2014), “대학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여성연구』, 제87권, 99-127쪽.
- 박미은(2002),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51권, 63-91쪽.
- 이명신·이계민(2009),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견조사: 경남지역 의사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진료실태와 의료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1호, 263-291쪽.
- ____·양난미(2011), “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1호, 159-185쪽.
- ____(2012),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83권 2호, 149-197쪽.
- ____·황채운(2014), “성폭력 상담사의 다전문직간 연계경험에 관한 질

- 적 연구”, 『상담학 연구』, 제15권 제 3호, 1101-1124쪽.
- 이미경(201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피해의 심층구조”, 『여성학연구』, 제 23권 2호, 43-75쪽.
- 이봉한·김윤주(2012), “범죄피해자 진술청취 시 공감적 조사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4권 3호, 217-239쪽.
- 장규원(2010), “피해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1권 4호, 251-274쪽.
- 조국(2002),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형사정책』, 제14권 2호, 185-210쪽.
- 최영애·이문자(2000),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진료수사』, 서울:(사)한국 성폭력상담소·(사)서울여성의 전화.
- 표지현(1998), “IS 조직과 Line 조직 간의 의사소통 및 공유지식이 IS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황정익(2007), “범죄피해자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호, 406-434쪽.
- Campbell, R. and S. Raja(2005), “The Sexual Assaul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Female Veterans: Help-Seeking Experiences with Military and Civilian Social Syste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 pp. 97-106.
- _____, D. Patterson, and L. F. Lichty(2005), “The Effectiveness of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SANE) Programs: A Review of Psychological, Medical, Legal, and Community Outcomes”, *Trauma, Violence & Abuse*, 6(4), pp. 313-329.
- _____, M. R. Greeson, and D. Bybee, et al.(2012), “Adolescent Sexual Assault Victims and the Legal System: Building Community Relationships to Improve Prosecution Rates”, *American Journal of*

- Community Psychology*, 50, pp. 141-154.
- Cole, J. and T. K. Logan(2010),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on Sexual Assault Response Teams(SART): The Role of Victim Alcohol Use and a Partner Perpetrat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pp. 336-357.
- Cross, T. P., D. Finkelhor, and R. Ormrod(2005), "Police Involvement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Investigations: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nalysis", *Child Maltreatment*, 10(3), pp. 224-244.
- Ducanis, A. & A. Golin(1979), *The Interdisciplinary Health Care Team: A Handbook*, London: Aspen Systems Corporation.
- Du Mont, J., K-L. Miller, and J. L. Myhr(2003), "The Role of Real Rape and Real Victim Stereotypes in the Police Reporting Practices of Sexually Assault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9(4), pp. 466-486.
- Feng, J-Y., S. Fetzer, and Y-W. Chen, et al.(2010),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Reporting Child Abuse: A Grounded The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 pp. 1483-1490.
- Fields, D. L.(2002), *Taking the Measure of Work*,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Garrett, P. M.(2004), "Talking Child Protection: The Police and Social Workers Working Together", *Journal of Social Work*, 4(1), pp. 77-97.
- Jones, L. M., T. P. Cross, and W. A. Walsh, et al.(2005), "Criminal Investigations of Child Abuse: The Research Behind Best Practices", *Trauma, Violence & Abuse*, 6(3), pp. 254-268.

- Jordan, J.(2008), "Perfect Victims, Perfect Policing? Improving Rape Complainants' Experiences of Police Investigations", *Public Administration*, 86(3), pp. 699-719.
- Kaukinen, C., and A. DeMaris(2009), "Sexual Assault and Current Mental Health: The Role of Help-Seeking and Police Response", *Violence Against Women*, 15(11), pp. 1331-1357.
- Laxminarayan, M.(2013), "Interactional Justice, Coping and the Legal System: Needs of Vulnerable Victims,"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19(2), pp. 145-158.
- _____, J. Henrichs, and A. Pemberton(2012),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A Comparative Study of Victims in the Netherlands and New South Wale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9(3), pp. 260-275.
- Maier, S. L.(2008), "I Have Heard Horrible Stories...: Rape Victim Advocates' Perceptions of the Revictimization of Rape Victims by the Police and Medical System", *Violence Against Women*, 14(7), pp. 786-808.
- McGregor, M. J., J. Du Mont, and D. White, et al.(2009), "Examination for Sexual Assault: Evaluating the Literature for Indicators of Women-Centered Care",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0(1-2), pp. 22-40.
- Payne, B. K.(2007), "Victim Advocates' Perceptions of the Role of Health Care Workers in Sexual Assault Case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8(1), pp. 81-94.
- Powell, M. and R. Cauchi(2011), "Victims' Perceptions of a New Model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Adopted by Victoria Police",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14(3), pp. 228-241.

- Reb, J., B. M. Goldman, and L. J. Kray, et al.(2006), "Different Wrongs, Different Remedies? Reactions to Organizational Remedies after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Injustice," *Personnel Psychology*, 59, pp. 31-64.
- Regehr, C., R. Alaggia, and L. Lambert, et al.(2008),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Canadian Criminal Courts," *Victims and Offenders*, 3, pp. 99-113.
- Robinson, A., K. Hudson, and F. Brookman(2008), "Multi-Agency Work on Sexual Violence: Challenges and Prospects Identified from the Implemenation of a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ARC)," *The Howard Journal*, 47(4), pp. 411-428.
- Sudderth, L. K.(2006), "An Uneasy Alliance: Law Enforcement & Domestic Violence Victim Advocates in a Rural Area", *Feminist Criminology*, 1(4), pp. 329-353.
- Trute, B., E. Adkins, and G. MacDonald(1992), "Professional Attitudes regarding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Comparing Police, Child Welfar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hild Abuse & Neglect*, 16, pp. 359-368.
- Ullman, S. E.(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uestionnair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pp. 257-271.
- _____ and S. M. Townsend(2007), "Barriers to Working with Sexual Assault Survivors: A Quallitative Study of Rape Crisis Center Workers", *Violence Against Women*, 13(4), pp. 412-443.
- Wasco, S. M.(2003), "Conceptualizing the Harm Doneby Rape: Applications of Trauma Theory to Experiences of Sexual Assault", *Trauma, Violence & Abuse*, 4, pp. 309-322.

〈인터넷 자료〉

경찰청(2014), “성폭력범죄 예방,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수사 지도”, www.police.go.kr(검색일: 2014.8.13).

뉴스시스(2015), “서울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팔 걷어 붙인다”, www.newsis.com(검색일: 2015.3.4).

(논문 투고일: 2015.04.15, 심사 확정일: 2015.05.21, 게재 확정일: 2015.06.01)

〈Abstract〉

**The Effects of Secondary Victimization Attitudes,
Justice Practice, and Multi-Professional Relationships
on Collaboration: A Comparison of Police Officers and
Counselors Who Work with Sexual-Assault Victims**

Lee, Myung Shin*

Yang, Nanmee**

Kim, Jeom Hee***

Moon, You Jeo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unselors who work together with sexual-assault victims. Using data collected from 114 police officers and 109 counselors, this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s in collaboration and the factors affecting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unselors. Analysis showed that the extent of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unselors was the highest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llaboration.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vels of doubt and prejudice, ability to provide available service information, respect for other professionals, and communicati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unselors. Police officers' levels of doubt and prejudice were higher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Women's Studi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Deputy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Women's Studi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Ph.D.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Ph.D.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an those of counselors, whose ability to provide available service information, respect for other professionals, and communication were higher than those of police officers. It was also found that respect for other professionals as well as communication were strong predictors of collaboration for police officers and counselors. For police officers, levels of doubt, ability to provide available service information, and explan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were found to b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collaboration.

Key words: police officers, counselors, collaboration among multi-professionals, secondary victimization, justice practice